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공고문

중증환자를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자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나. 사업목적

-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절차 점검
-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사업의 유효성 평가
-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제도의 인지도 제고

다. 사업기간 : '26년 10월 ~ '27년

* '27년 시범사업 평가 후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

라. 선정규모 : 1개 시·도

* 유사한 사업(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제외

마.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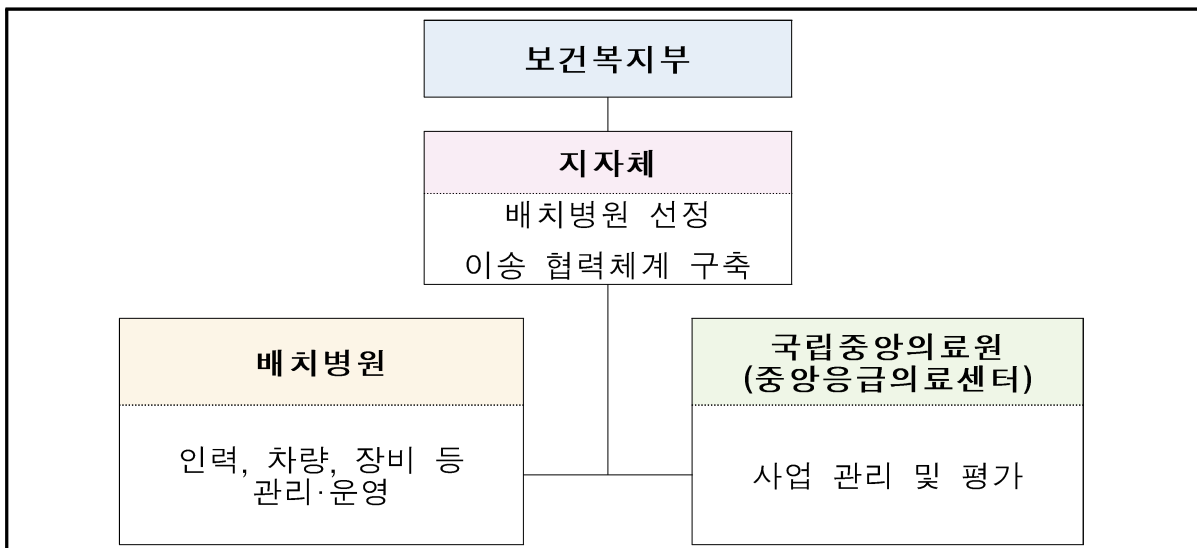
- 지역 내 의료기관에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이하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영하여 병원 간 중증환자 이송체계 운영
- 재난 발생 시 현장 의료지원
-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하여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

바. 예산 : '26년 국비 410백만원(지방비 50% 매칭)

- 차량·장비 구입 : 국비 220백만원(지방비 50% 매칭)
- 인건비(3개월) : 국비 182.4백만원(지방비 50% 매칭)
- 운영비(3개월) : 국비 7.5백만원(지방비 50% 매칭)

사.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아. 추진체계



2. 지역 공모·선정방안

가. 신청 단위

○ 광역지방자치단체

- 신청지역이 1개소인 경우 별도 추가 공고 없이 적정성 평가
- * 신청지역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사업 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 선정

나. 사업신청 절차

○ 지자체는 전담구급차를 배치할 관내 의료기관 공모·선정

- *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대상임

- ** 적정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한 지자체만 공모 참여 가능

○ 의료기관 선정평가 결과와 시·도 기관장의 추천서 및 확인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

- 의료기관 선정 후, 지자체 주관하에 의료기관 사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의 전담구급차 도입·운용 사업계획서를 제출

- * 본문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공모·선정 절차 및 붙임 참조

다. 선정심사 : 사업계획서 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사업계획 평가) 정량부분과 정성부분 평가

○ (현장평가) 시·도 사업계획서 및 의료기관 평가서 등 제출 자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제출 자료와 다른 경우 보완(계획)을 명하고, 사업 최초 연도 내 구체적 보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시 반영

○ (종합평가) 사업계획서 및 현장평가를 반영하여 배치 지자체 결정

- 평가 주체는 시도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는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3. 세부 시범사업 내용

가. 전담구급차 운용 개요

- 응급의료장비 구비 및 전문의료 인력이 탑승한 중증환자 이송 전용 구급차로서 배치병원에서 운영
- 심정지, 급성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인공호흡기 적용, 출혈성 쇼크 등 이송 중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이송
- **365일 24시간** 운용
- 행정구역(광역시·도) 단위 이송
 - 요청·수용 병원 중 1곳은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광역상황실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이송 가능

나. 전문이송체계 구축·운영

- 구급차 및 장비
 - 전담 구급차는 중환자실(ICU)과 동일 환경을 갖춘 '움직이는 중환자실'이며,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의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로 목표 체온조절장치(Target Temperature Management, TTM), 체외막산소공급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 **중증환자 이송에 적합한 특수 의료장비 탑재**가 가능하여야 함



- 미국 구급차 기준 Type III의 특수구급차 (일반 구급차의 1.5배 크기, 공간이 넓어 중환자 의료장비 탑재 가능)
 - * 왼쪽: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오른쪽: 일반구급차

* **탑재 의료장비(안)** : 제세동 모니터, 인공호흡기, 자동흡부압박기, POCT 혈액검사기계, 약물 주입펌프 5개, 환자감시장치, 산소밸브, 장비거치대, 고유량산소비강캐놀라, 분리형 들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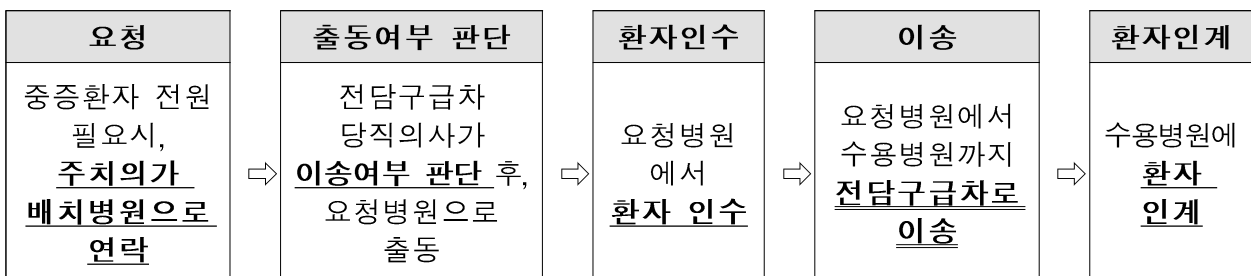
○ 인력

- 각 조는 **의사 1인**(응급의학과전문의,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
- 교대 근무를 고려하여 **총 5개조로 운영**
 - * 전담의료팀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는 모두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고, 의사는 40% 이상을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 다만, '25년은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의사의 전원 검직도 허용(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는 전담)

○ 운용 방법

- (요청병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이송대상 확인 및 수용병원 협의
→ 수용병원 확정 후 MICU 전원 요청 → MICU 출동 시 환자 인계
- (배치병원) 당직자가 출동여부 판단 → 출동 시 요청병원으로 이동
→ 환자 인수 → 이송 → 수용병원 환자 인계 후 복귀
- (수용병원) 환자 수용여부 확정 → MICU로부터 이송환자 인수

< MICU 이송 과정 >



○ 이송대상 : 중증환자로 전문적 모니터링과 처치가 필요한 전원 환자

-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내 응급실, 중환자실 재실환자

< MICU 이송 대상 >

- 심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통합적인 소생 후 후속 진료 연계가 필요한 환자
- 급성 심근경색증/급성뇌졸중/폐혈증 진단 또는 의심 환자
- 출혈성 쇼크 또는 기타 쇼크 상태의 중증외상환자

-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호흡부전 환자
- 응급수술 및 중재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환자
- 특수 전문 인력 또는 특수 의료장비가 필요한 환자(고위험 산모, 신생아, ECMO 등)
- 감염병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중증환자
- 기타 의학적으로 전문적 모니터링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다. 재난대응

-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에서 응급의료 제공(시급성, 자원 부족 등)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배치 지자체장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 중증환자 이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 거절 가능

라. 항공이송 연계

- 항공 이송과 연계하여 중증환자 이송이 필요하여 요청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 당직의사가 이송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고 및 기간: '26. 6. 2.(화) ~ '26. 8. 14.(금)

나. 제출서류 : 공문 및 심사자료 파일 제출

-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관련 증빙자료 포함)

다. 신청방법 :

- *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상기 내용이 저장된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 (jj202@korea.kr)로 별도 제출 필요

라. 제출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jj202@korea.kr ☎ 044-202-2642)

마.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 044-202-2641~2)
- 중앙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현장이송팀(☎ 02-6362-3416)

5. 추진일정 ※ 상황 변화 등에 일정 조정 가능, 변경 시 사전 안내

가. 공고 및 기간 : '26. 6. 2.(화) ~ '26. 8. 14.(금)

나. 심사 진행 : '26. 8. 20.(목) ~ 8. 21.(금)

※ 대면심사 관련 세부 일정은 공고 마감 후 별도 통보 예정

다. 선정결과 통보 : '26. 8. 26.(수)

라. 세부이행계획서 제출 : '26. 8. 31.(월)

※ 선정된 지역은 수행기관 선정 및 전담인력 채용을 신속히 실시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우리 부 또는 우리 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의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붙임 1.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신청서 1부
2.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의료기관 추천서 1부
3.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지원 확인서 1부
4. 의료기관 선정 서면평가표(안) 1부
5. 의료기관 현지 평가표(안) 1부
6. 시·도별 의료기관 평가 및 선정결과 집계표 1부.

[붙임 1]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신청서

- 시·도명 :
- 소재지 :
- 시·도지사 성명 :

상기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26년 월 일

○ ○ ○ 시·도지사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의료기관 추천서

- 추천 시·도명 :
- 추천 의료기관명 :
 - 소재지 :
 - 대표자성명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관련
공모 조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시·도지사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지원 확인서

- 시·도명 :
- 소재지 :
- 시·도지사 성명 :

상기 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 시범사업 관련 예산 지원
 - * 국고보조율 : 국비 50% 및 지방비 50%
- 사업운영 위탁(국립중앙의료원) 계약
- 시범사업 운영 관련 배치병원 지도·감독
- 관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구급차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도 내 보건-행정-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 지역 간 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사업 홍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사항

2026년 월 일

○ ○ ○ 시·도지사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4]

의료기관 선정 서면평가표(안)

○ 의료기관명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영역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① 의료기관 치료의 적정성(25점)	1.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 심정지 환자 등)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등) 확보 수준	10	
	2.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등) 확보 수준	10	
	3.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 실적	5	
② 전담구급차 운용 적정성 (60점)	1. 배치병원 선정의 적정성 (운용범위 및 이송시간 고려)	10	
	2.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사업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배치 수준	10	
	3.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지원 정도	5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5	
	5.약품, 장비 등 물품지원 역량	10	
	6. 주차장 및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유지관리 시설 확보 여부	10	
	7.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 공간 제공 수준 (대기실, 약품창고 등)	10	
③ 의료기관 참여의지(10점)	1. 기관장 추진의지 및 자부담 수준	10	
④ 관계기관 연계체계 적정성(5점)	1. 관내 응급의료 관계기관(시도,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 연계체계 수준	5	

※ 시·도는 동 평가표 및 배점기준을 반드시 적용

[붙임 5]

의료기관 현지 평가표(안)

○ 의료기관명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구분	평가항목	적정 여부 (O / X)	비고
사업 계획서의 근거자료 확인	1.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 심정지환자 등)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확보 수준		
	2.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등) 확보 수준		
	3.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 실적		
	4.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배치 수준		
	5.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역량		
	6. 의료기관 위치의 적정성 (출동 시 동선 및 거리의 적정성)		
	7. 전담구급차 운용을 위한 필수시설 공간 제공 수준 (주차장, 대기실, 약품창고 등)		

※ 시·도는 동 평가표를 반드시 적용

○ 종합의견

종합 평가 의견	평가위원 성명

[붙임 6]

시·도별 의료기관 평가 및 선정결과 집계표

○ 시·도명 :

순위	의료기관명	평가점수(100점)			특이사항	추천여부
		소계	서면평가 점수(100점)	현지평가 통과여부		
1						
2						
3						
4						
5						

※ 평가대상 의료기관 전체 작성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선정 평가표(안)

○ 시도명 :

평가 영역 (배점: 100점 만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①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의 필요성(30점)	1. 관할지역 내 이송취약지 거주인구를 고려한 필요성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규모 등)	10	
	2. 관할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과 특성(이송자원 분포, 이송거리와 시간 등)	10	
	3.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으로 인한 이송 개선 효과 정도	10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적정성 (35점)	1. 자치단체장의 참여의지 및 사업비 확보계획	15	
	2.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활용 계획 (시범사업 종료 후 활용 계획 포함)	10	
	3.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위기관리 계획 (정기점검 회의 개최 등)	10	
③ 의료기관 선정의 적정성 (35점)	1. 선정된 의료기관의 최적성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수준, 최근 3년간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실적, 치료 역량의 적정성 등)	10	
	2.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용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보계획	10	
	3.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계획	5	
	4. 인근 의료기관간 연계체계 수준 및 협조체계 등을 포함한 향후 발전 계획	5	
	5.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용 지원계획 및 의료 기관장 추진 의지	5	
<종합의견>			

평가위원

성명 : (서명)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예시)

1. 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1.2 목적

2. 시·도 주요현황

2.1 일반현황

- 관내 이송 취약지역 분포 및 취약지역의 인구수, 면적 등

2.2 의료자원 현황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인력 및 의료기관 분포, 이송수단 등

2.3 중증응급환자 및 주요 중증환자 수(공식통계자료)

2.4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으로 인한 중증환자 이송의 개선효과

3.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관리·운용 계획

3.1 사업예산 확보 계획

3.2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용 계획

* 시범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포함

3.3 전담구급차 운용 중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위기관리 계획

* 사고 등 민원 발생 시 관리 방안 구체적으로 명시

3.4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홍보 계획

4.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배치 의료기관 주요현황

- 4.1 의료기관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현황(시설, 장비, 인력)
- 4.2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실적 및 치료 역량 기술
- 4.3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 현황(시설, 장비, 인력)
- 4.4 공모 참여 의료기관 간 비교 및 최적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근거
- 4.5 선정된 의료기관의 우수성과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 수행의 적합성 기술
- 4.6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용계획
(신고접수체계, 전담인력, 의약품 및 의료용품 공급, 의료진 교육훈련 등)

5.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별첨>

- 1. 사업 신청서(원본) 1부
- 2. 사업 추천서(원본) 1부
- 3. 자치단체장 사업 지원 확인서(원본) 1부
- 4. 시도별 의료기관 평가 및 선정결과 집계표 1부
- 5. 의료기관 평가 및 선정결과 증빙자료 각 1부